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9,000,000	22,770,000
일반회계	677,500,000	20,325,000
특별회계	81,500,000	2,445,000
공기업특별회계	56,000,000	1,680,000
수도사업특별회계	30,200,000	906,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800,000	774,000
기타특별회계	25,500,000	765,000
수질개선특별회계	5,811,000	174,3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17,000	69,51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1,382,000	41,4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908,000	87,24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48,000	10,44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26,000	72,780
치수사업특별회계	2,316,000	69,480
기반시설특별회계	586,000	17,580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특별 회계	1,113,000	33,390
주 차 장 특 별 회 계	6,293,000	188,790

-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173,011천원으로 한다.
- 제 4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7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